

[] 여객자동차운송사업
[] 자동차대여사업
[]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
[]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

양도 · 양수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(신고)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5일
양 도 인	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(소재지)	전화번호
양 수 인	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(소재지)	전화번호
신고 내용	사업의 종류	노선 또는 사업구역
	양도 가격	양도 · 양수의 시기
	양도 · 양수의 사유	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 · 제35조 · 제49조의9 · 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· 제71조 · 제93조의9 · 제9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양도인(파는 사람)

(서명 또는 인)

양수인(사는 사람)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
시 · 도 지 사

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공통 가. 양도 · 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나.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(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다.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2. 양수인이 운송사업자 ·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.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 나.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) 정관(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) 1부 2)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)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	수수료 3,000 원
	담당공무원 확인사항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